

의안번호	2209373
의 퇴 인	진종오의원
회 답 일	2025.6.10.
추 계 번호	25B194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궤도시설 중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궤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동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1,100만원, 2030년 4,800만원 등 향후 5년 간 4억 1,600만원(연평균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전검사							
－궤도시설 정밀안전검사 주기변경 (안 제19조제1항제3호)	—	—	—	67	12	79	16
－궤도시설 집중검사 실시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111	20	25	144	37	337	67
합계	111	20	25	211	48	416	83

주 1. 본 추계는 정밀안전검사와 집중검사 단가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평균사업비 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시설별 검사비용 등이 확정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2. 현재 집중검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향후 시설별 집중검사 대상이 확정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안전검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제1항)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하는 검사 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u>3년마다</u>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현행) 5년마다 → (개정안) 3년마다	
		4. 집중검사 : 매년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검사.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신설)	의무규정
		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검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 다만, 동절기에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집중검사를 면제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9조 (안전검사)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궤도시설 중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궤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른 소요비용(안 제19조제1항제3호)과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월 1회 이상 집중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 대상과 검사 단가를 바탕으로 해당 비용을 추산함

- 검사비 단가는 시설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확정된 바 없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검사비 평균 단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정밀안전검사 주기 변경(안 제19조제1항제3호)

- 개정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궤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궤도시설에 대한 검사주기 단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준공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지난 궤도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궤도사업자이거나 전용궤도운영자인 시설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정밀안전검사 비용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단가가 없어, 궤도시설 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견적서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가정함
 -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증가하는 검사횟수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을 추산함
 - 궤도시설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현행 궤도시설 수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검사주기 단축에 따른 검사횟수 증가분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함

1)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5.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궤도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연도별 대상 시설수에 정밀안전검사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현행)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공궤도시설(궤도 및 삭도) 중 5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추계기간 동안 32개 시설임

[표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궤도시설 중 5년 주기(현행) 정밀안전검사 대상 시설: 2026~2030년

(2025.5. 기준, 단위: 기)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삭도시설	5	1	1	1	0	8
궤도시설	13	2	3	3	3	24
소계	18	3	4	4	3	3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정안)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공궤도시설(궤도 및 삭도) 중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추계기간 동안 53개 시설임

[표 3]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궤도시설 중 3년 주기(개정안) 정밀안전검사 대상 시설: 2026~2030년

(2025.5. 기준, 단위: 기)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삭도시설	5	1	1	6	1	14
궤도시설	13	2	3	16	5	39
소계	18	3	4	22	6	5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계대상시설) 개정안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주기 변경([표 3]에서 [표 2] 차감)에 따라 추가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2029년부터 발생하며, 추계기간 동안 21개 시설임

[표 4] 개정안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주기 변경에 따른 대상 시설: 2026~2030년

(2025.5. 기준, 단위: 기)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삭도시설	—	—	—	5	1	6
궤도시설	—	—	—	13	2	15
소계	—	—	—	18	3	2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단가)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단가를 바탕으로 하며, 시설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삭도시설 : 설치비용이 가장 높은 ‘자동순환식 개방식 1,000m 이하’ 기준 단가인 521만원 적용
- 궤도시설 : 설치비용이 가장 높은 ‘50인 이하 톱니바퀴식 모노레일’ 기준 단가인 278만원 적용
-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계대상 궤도시설 수에 정밀안전검사 단가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공공궤도시설 정밀안전검사 주기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삭도시설	설치 수(A, 기)	—	—	—	5	1	6
	정밀진단 단가(B, 백만원)	5.314	5.420	5.529	5.639	5.752	—
	소계(C=A×B, 백만원)	—	—	—	28	6	34
궤도시설	설치 수(A, 기)	—	—	—	13	2	15
	정밀진단 단가(B, 백만원)	2.836	2.892	2.950	3.009	3.069	—
	소계(C=A×B, 백만원)	—	—	—	39	6	45
합계		—	—	—	67	12	79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집중검사 실시(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 개정안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매년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동안 월 1회 이상 집중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궤도시설의 경우 집중검사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집중검사는 동절기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집중검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대상) 집중검사 대상은 개정안에 따라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공공궤도시설로 설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연간 3회씩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단가) 집중검사 단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됨
 - 삭도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순환식 개방식 1000m 이하’ 기준 단가인 320만원 적용
 - 궤도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50인 이하 톱니바퀴식 모노레일’ 기준 단가인 157만원 적용
 -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계대상 궤도시설 수에 집중검사 비용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공공궤도시설 집중검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삭도시설	설치 수(A, 기)	5	1	1	6	1	14
	정밀진단 단가(B, 백만원)	3.264	3.329	3.396	3.464	3.533	—
	소계($C=A \times B \times 3$ 회, 백만원)	49	10	10	62	11	142
궤도시설	설치 수(A, 기)	13	2	3	16	5	39
	정밀진단 단가(B, 백만원)	1.601	1.633	1.666	1.699	1.733	—
	소계($C=A \times B \times 3$ 회, 백만원)	62	10	15	82	26	195
합계		111	20	25	144	37	33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궤도시설 중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궤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동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1,100만원, 2030년 4,800만원 등 향후 5년 간 4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궤도시설 정밀안전검사 주기변경 (안 제19조제1항제3호)	—	—	—	67	12	79
궤도시설 집중검사 실시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111	20	25	144	37	337
합계	111	20	25	211	48	416

주 1. 본 추계는 정밀안전검사와 집중검사 단가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평균사업비 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시설별 검사비용 등이 확정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2. 현재 집중검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향후 시설별 집중검사 대상이 확정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정밀안전검사와 집중검사 단가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평균사업비 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향후 시설별 검사비용 등이 확정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집중검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향후 시설별 집중검사 대상이 확정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소관 레도시설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자가 지자체인 레도시설 현황

구분	업체수		
	민간	지자체	합계
삭도시설	56개 업체 162기	9개 업체 11기	65개 업체 173기
레도시설	21개 업체 25기	40개 업체 47기	61개 업체 72기
합계	77개 업체 187기	49개 업체 58기	126개 업체 245기

□ 지방자치단체 소관 레도시현황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설치 기수	최초 정밀안전검사 시행연도 (a)	개정안에 따른 3년 주기 (a+3)	연수
삼척시	대금굴	2007-04-01	관광용	1	26년	29년	18년
창원시	제황산	2009-03-27	관광용	1	26년	29년	15년
정선군	고한아파트	2009-09-01	전용	1	26년	29년	15년
제천시	청풍호	2013-01-24	관광용	1	26년	29년	12년
순천시	국가정원 박람회장	2014-03-31	관광용	1	26년	29년	11년
부산중구청	영주동 오름길	2014-04-04	전용	1	26년	29년	11년
금강홍수통제소	서대산	2014-07-01	전용	1	26년	29년	11년
한강홍수 통제소(홍천)	가리산	2015-03-01	전용	1	26년	29년	10년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설치 기수	최초 정밀안전검사 시행연도 (a)	개정안에 따른 3년 주기 (a+3)	연수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2015-04-14	관광용	1	26년	29년	10년
나주시	빛가람 전망대	2016-04-07	관광용	1	26년	29년	10년
영산강홍 수통제소	모후산	2016-08-30	전용	1	26년	29년	10년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2016-11-03	관광용	1	26년	29년	10년
구미시	구미 에코랜드	2016-11-30	관광용	1	26년	29년	10년
영천시	보현산댐	2017-05-22	관광용	1	27년	30년	9년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 림	2017-11-01	관광용	1	27년	30년	9년
합천군	영상 테마파크	2018-01-09	관광용	1	28년	31년	8년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화암동굴	2018-09-13	관광용	1	28년	31년	8년
예천군	곤충생태 원	2018-12-21	관광용	1	28년	31년	8년
구례군	구례 생태숲	2019-04-01	관광용	1	29년	32년	7년
한강홍수 통제소(남양주)	예봉산	2019-06-03	전용	1	29년	32년	7년
인천교통공사	월미도	2019-07-25	관광용	1	29년	32년	7년
함양군	대봉산 자연휴양 림	2020-02-18	관광용	1	30년	33년	6년
울릉군	태하등	2020-03-28	관광용	2	30년	33년	6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지방자치단체 소관 석도 현황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설치 기수	최초 정밀안전 검사 시행연도 (a)	개정안에 따른 3년 주기 (a+3)	연수
울릉군	울릉도	1998-06-27	관광용	1	26년	29년	27년
통영 관광개발공사	미륵산	2007-12-21	관광용	1	26년	29년	18년
강원도청	중봉알파 인경기장	2016-12-28	관광용	3	26년	29년	10년
삼척시	용화-강 호	2017-06-30	관광용	1	27년	30년	9년
사천시	각산초양도	2018-04-04	관광용	1	28년	31년	8년
울진군	엑스포 공원	2019-10-02	관광용	1	29년	31년	7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